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반영한 법률 정비〉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68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반영한 법률 정비 ..... | 2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9. 9.

다. 회 부 일 : 2026. 9.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 Ⅲ. 검토의견

#### 1.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반영한 법률 정비

##### 가. 개정안의 내용

-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등 관련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공소청의 장을 명시함(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
-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함(안 제49조의3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br>(생 략)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 |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 ④ -----<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br>·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br>-----<br>--.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1. -----<br>-----<br>-----<br>-----<br>-----<br>-----<br>-----<br>-----<br>-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u> 또는 <u>수사기관</u> -----<br>----- |
| 2. · 3. (생략)<br>⑤ · ⑥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br>⑤ · ⑥ (현행과 같음)                                                                                                                   |
|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                                                                                        |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u>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u> -----<br>-----<br>-----                                                             |

| 현행                                                                                         | 개정안                                                                      |
|--------------------------------------------------------------------------------------------|--------------------------------------------------------------------------|
| <p>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 부칙</p> <p>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p>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정보의 유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거나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44조의7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sup>1)</sup>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sup>2)</sup>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sup>3)</sup>에 해당하는 경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 (각 목 외의 부분 생략)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수사기관의 장 포함)의 요청이 있었고, ②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sup>4)</sup> 명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49조의3제1항은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sup>5)</sup>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6)</sup>.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현행 시행령에서는 법률과 동일하게 경찰청장·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정하고 있음.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의 특성상, 정보 삭제나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2차 피해와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기반이 마련되고,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었으나<sup>7)</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개별 법령에는 새로운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종전에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검찰청이 수행 하던 역할을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7).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개정안에 따른 요청 주체 변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44조의7제4항제1호<br>(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br>(수사기관의 장 포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br>[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br>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br>또는 수사기관의 장 포함] |
| 제49조의3제1항<br>(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 경찰청장· <b>검찰총장</b> ·<br>금융감독원장 | <u>중대범죄수사청장</u> ·경찰청장·<br><b>검찰총장</b> ·금융감독원장                            |

- 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검찰총장<sup>8)</sup>)에 추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소유지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요청 범위를 넓히는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임.

8) 「공소청법」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함.

|              |
|--------------|
| 문 의 처        |
| 02)6788-5235 |